

[별첨 9] 이전지역인재의 기준

□ 이전 지역인재의 개념

-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(이하 “이전지역 학교”라 함)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사람으로서, “우리공사의 지원자”는 “충청북도·충청남도·세종자치시·대전광역시”에 소재한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사람을 의미함

※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 [8학기, 전문대학의 경우 2년(4학기)] 이상 등록하고,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,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‘원서접수 기한’까지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·제출할 수 있는 자를 말함

□ 이전지역 학교

-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(우리공사는 “충북·충남·세종자치시·대전광역시”)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
 - 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,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 등의 본교
 - *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도 이전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포함
 - 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(이원화 캠퍼스)
 - *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우리공사의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, 우리공사 이전지역 학교로 포함되며,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(졸업예정)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
 - **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우리공사의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우리공사의 이전 지역학교로 포함
 - ③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

- ④ 특별법으로 설치된 아래의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,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이전지역학교에서 제외

- ㉠ 「경찰대학 설치법」에 의한 경찰대학(경기)
- ㉡ 「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·해·공군사관학교(서울·경남·충북)
- ㉢ 「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(대전)
- ㉣ 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(경북)

- ⑤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
*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

□ 이전 지역인재 세부기준

- 이전지역 학교를 졸업(예정)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음

- ① 다음의 이전지역 대학의 졸업(예정)자

- ㉠ 이전지역에 위치한 「고등교육법」상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
- 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우리공사가 이전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

- ②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

- ㉠ 「고등교육법」 및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
- ㉡ 「고등교육법」에 규정된 사이버대학
- ㉢ 「평생교육법」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
- ㉣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
- ㉤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

-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
- ㉠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우리공사의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- ㉡ 우리공사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우리공사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